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469호 2019. 10. 7(월)

## 차 례

###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8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16호선) 실시계획인가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82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 3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83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 5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84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7

###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593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597호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32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613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 40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9-180호

##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16호선)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1999-80(1999.06.23.)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도시계획 시설[도로: 소로3-16호선, 사업명: 원당지구 보행자도로 소3-16호선 개설공사]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577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9. 10. 7.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10-1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16호선)사업
  - 【명칭】 원당지구 보행자도로 소3-16호선 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16호선) L=216m, B=3m 중  
금회 개설 L=164m, B=3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44번지)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0. 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인천 서구 원당동	810-13	도	1577.5	487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 서구 서곶로 307(심 곡동 244)				
계				1577.5	487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9-182호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인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 AB4블록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 15조(사업계획의 승인)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내용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0. 7.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인천 당하동 검단신도시 AB4블록 공동주택 신축
2. 사업주체 : 대방건설(주) (대표 구찬우)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 AB4블록
  - 나. 대지면적 : 69,448㎡
  - 다. 사업규모 : 연면적 221,097.4742㎡ (지하2층, 지상19~25층)
  - 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15개동 1,279세대 및 이에 따르는 부대·복리시설
  - 마. 사 업 비 : 557,402,785천원
4. 사업기간 : 2019. 03. 12. ~ 2022. 03. 03.
5. 변경사항
  - 가. 세대 욕실 바닥 난방 추가

- 나. 지하 2층 주차장 바닥 방수 변경(액체방수→배수판)
- 다.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지붕마감 추가
- 라. 아파트 배면 창 추가
- 마. 용역원 휴게실 설치
- 바. 주민공동시설 높이 변경(2.4m→2.7m)
- 사. 104동, 112동 기둥 변경
- 아. 누락 및 오기 사항 정정 등

6.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9-183호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공동2블록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 15조(사업계획의 승인)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내용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0. 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인천 가정동 루원시티 공동2블록 공동주택 신축
2. 사업주체 : (주)제이에스파트너스개발 (대표 이재국)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공동2블록
  - 나. 대지면적 : 41.802m<sup>2</sup>
  - 다. 사업규모 : 연면적 203,166.8678m<sup>2</sup> (지하4층, 지상49층)
  - 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14개동 1,128세대 및 이에 따르는 부대·복리시설
  - 마. 사 업 비 : 523,401,310.002천원
4. 사업기간 : 2019. 10. 30. ~ 2022. 10. 30.

## 5. 변경사항

가. 연면적 변경(203,918.1308m<sup>2</sup> → 203,166.8678m<sup>2</sup>)

나. 조경면적 등 변경

다. 단위세대 변경(주방가구, 붙박이장, 창호 등)

라. 주민공동시설 변경(경로당, 어린이집, 미화원 휴게시설, 독서실, 키즈카페 등)

마. 근린생활시설 변경 등

## 6.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9-184호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5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0. 07.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건지로 144-2 외 10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10.07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 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9-10-07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3-663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144-2 (가좌동)	20090922	이 도로의 중심 부근이 옛 건지골을 지나므로 명명(건지는 옛날 이 지역에 있던 마른 언덕)	
2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3-667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144-1 (가좌동)	20090922	이 도로의 중심 부근이 옛 건지골을 지나므로 명명(건지는 옛날 이 지역에 있던 마른 언덕)	
3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3-668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144-5 (가좌동)	20090922	이 도로의 중심 부근이 옛 건지골을 지나므로 명명(건지는 옛날 이 지역에 있던 마른 언덕)	
4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1-110	인천광역시 서구 복향로 28-29 (원창동)	20090922	인천의 대표적 향구인 복향을 지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8-45	인천광역시 서구 청서로 37 (청라동)	20101111	청라대로 서쪽에 위치	
6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22-14	인천광역시 서구 미중3로 11 (오류동)	20121025	미중로에서 세번째 분기되는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8-475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934번길 41-12 (가좌동)	20090710	백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3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8-407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934번길 41-17 (가좌동)	20090710	백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3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8-470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934번길 41-8 (가좌동)	20090710	백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3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8-460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934번길 30-12 (가좌동)	20090710	백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3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조서

고시일 : 2019-10-07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 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원정로165번안길 16 (원정동)	고물상폐지-주차장	20081231	원정로165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1593호

##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관련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10. 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개정이유

가.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내용을 알기 쉽게 별표로 규정하고, 예산집행 시 지출 증빙서류를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행정안전부 훈령 제54호, 2018. 9. 4 개정)의 개정사항 반영

나.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사항 반영(2019. 7. 11.)

### 2. 주요내용

가. (지출 증빙서류 등의 전자적 보관 근거 마련)전자적 정보처리 시스템에 따라 생성된 문서는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신설(안 제150조)

나. 2019년 서구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 및 부서명 변경

1) (국 명칭변경) 총무국 → 자치행정국

2) (본청의 관서 추가) 실·과 → 단·실·담당관·과

(안 제2조, 안 제7조, 안 제9조, 안 제11조, 안 제22조)

다. (인감증명 제출요구 사무감축 추진) 인감증명 제출을 요구하는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확대  
(현행)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추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안 제54조)

라. (별표 규정)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을 열거방식에서 별표로 규정  
(안 제3조)

마.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법령에 따라 정비함

### 3.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0.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인천광역시 서구청 재무과 (전화032-560-4158, FAX560-2720)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구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재무과(032-560-41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 제안이유

- 가.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내용을 알기 쉽게 별표로 규정하고, 예산집행 시 지출 증빙서류를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행정안전부 훈령 제54호, 2018. 9. 4 개정)의 개정사항 반영
- 나.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사항 반영(2019. 7. 11.)

### 2. 주요내용

- 가. (지출 증빙서류 등의 전자적 보관 근거 마련)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에 따라 생성된 문서는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신설  
(안 제150조)
- 나. 2019년 서구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 및 부서명 변경
- 1) (국 명칭변경) 총무국 → 자치행정국
  - 2) (본청의 관서 추가) 실·과 → 단·실·담당관·과  
(안 제2조, 안 제7조, 안 제9조, 안 제11조, 안 제22조)
- 다. (인감증명 제출요구 사무감축 추진) 인감증명 제출을 요구하는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확대  
(현행)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추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안 제54조)
- 라. (별표 규정)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을 열거방식에서 별표로 규정  
(안 제3조)
- 마.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법령에 따라 정비함

### 3. 참고사항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라. 관계 법령 발췌 : “해당 없음”

서구규칙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실·과”를 “단·실·담당관·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하부행정기관중”을 “하부행정기관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람”을 “직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별표 1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별표1”을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재무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7조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단서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한다.

제55조제4항 본문 중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별표 3)”을 “(별표 4)”로 한다.

제76조제5항 본문 중 “출납원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보통예금계좌(가상계좌 포함)”로 한다.

제7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출납원은 제4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세출외현금을 소관하는 부서의 담당자로 하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한다.

제8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별표 5)에 의하여”로 한다.

제99조제2항 중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15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증빙서류는 해당 회계관서에서 원본을 보관하되,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에 따라 생성된 문서는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제10장의 제목 “보칙”을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으로 한다.

제158조제1항 중 “대”를 “때”로, “이네”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불입”을 “불입”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호부터 5호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관서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본청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을 말한다.</p> <p>2. 실·과는 관서의 실·과를 말한다.</p> <p>3. (생략)</p> <p>4. 그 밖의 관서는 구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u>하부행정기관</u>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p> <p>5. (생략)</p> <p>② ~ ④ (생략)</p> <p>⑤ 제4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공무원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u>사람</u>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신설 2009.11.20, 개정 2017.6.12., 2018.6.1)</p>	<p>제2조(정의) ① ----- -----.</p> <p>1. ----- ----- <u>한다</u>-----.</p> <p>2. ----- <u>단·실·담당</u> <u>관·과</u>-----.</p> <p>3. (현행과 같음)</p> <p>4. ----- ----- <u>하부행정기관 중</u> ----- -----.</p> <p>5.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 <u>직원</u>----- ----- ----- ----- ----- ----- ----- -----</p>
<p>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p> <p>①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을 <u>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u></p>	<p>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p> <p>① ----- ----- ----- ----- ----- <u>별표 1과</u> -----</p>

한다.

## 1. 본청

가. 회계책임관: 총무국장

나. 징수관 - 총무국장

다. 분임징수관 - 세무1·2과장,  
세외수입업무를 담당하는 각  
실·과장

라. 재무관 - 총무국장

마.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각  
실·과장(일반경비 중에서 해  
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바. 총괄채권관리관 - 총무국장

사. 채권관리관 - 소관 실·과장

아. 총괄부채관리관 - 기획예산  
실장

자. 부채관리관 - 소관 실·과장

차.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예산  
실장

카. 통합지출관 - 재무과장

타. 지출원 - 경리담당

파.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업  
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담당

하.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과 서  
무업무담당

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재  
무업무담당자

## 2. 구 의회

-----.

<삭 제>

<삭 제>

- 가. 징수관 - 사무국장
- 나. 재무관 - 사무국장
- 다. 채권관리관 - 사무국장
- 라. 부채관리관 - 사무국장
- 마. 지출원 - 의정업무담당
-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

3. 제1관서 (동에 대해서는 제5호에  
서 별도지정)

- 가. 징수관 - 관서의 장
- 나. 분임징수관 - 세입담당과장
- 다. 재무관 - 관서의 장(본청 일  
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 라. 분임재무관 - 회계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  
경비출납원), 각 실·과장(제1  
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  
무관이 지정한 경비)
- 마.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 바. 부채관리관 - 관서의 장
- 사. 지출원 - 재무업무담당
- 아.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 자.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  
당
- 차.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  
무업무담당자

4. 그 밖의 관서·임시관서

<삭 제>

<삭 제>

- 가. 징수관 - 관서의 장
- 나. 분임재무관 -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 다.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 라. 일상경비출납원 - 서무업무  
담당(자)
- 마.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  
당
- 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재  
무업무담당

#### 5. 동

- 가. 징수관 - 동장
- 나. 재무관 - 동장(본청 일상경비  
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 다. 채권경리관 - 동장
- 라. 지출원 - 재무업무담당(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  
출납원)
- 마.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  
당
- 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재  
무업무담당자
- 사. 일상경비출납원 - 지출원이  
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  
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  
함)

② (생략)

#### <삭제>

② (현행과 같음)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1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법 시행령 제25조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신설 2017.6.12, 개정 2018.6.11.)

제7조(관서의 신설 등) 관서를 신설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총무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요구서) ① 제8조의 예산편성 방침을 통보받은 각 기관 주무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2통 작성하여 소속 실·과장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③ -----  
----- 별표 2-----.

④ -----  
-----  
-----  
-----  
-----.

----- 재무관-----

제7조(관서의 신설 등) -----  
----- 자치행정국장-----.

제9조(예산요구서) ① -----  
-----  
-----  
-----

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기획예산실  
장에게 제출하되, 세입예산은 반드시 총무국장과 세무1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②·③ (생략)

제11조(예산의 사정) ① (생략)

② 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  
에는 기획예산실장은 주관 국장 또  
는 실·과장, 구의회 사무국장과 제  
1관서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  
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총무국장과  
세무1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제5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 총  
무국장 또는 재무과장, 구의회 사무  
국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  
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의 일상경  
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단서  
신설 2011.6.15.)

1. ~ 8. (생략)

-----  
-----  
---- 자치행정국장-----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예산의 사정) ① (현행과 같  
음)

② -----  
-----  
-----  
-----  
----- 자치행정국  
장-----  
-----.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

-----  
-----  
----- 자치  
행정국장 -----  
-----  
-----  
-----  
-----  
-----  
-----

1. ~ 8. (현행과 같음)



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  
로 즉시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 ~ ⑤ (생략)  
<신설>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출납원은 제4항에 따라 세입세  
출외현금의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세출외현금을  
소관하는 부서의 담당자로 하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보  
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  
료를 첨부하도록 한다.

제85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조례 또는 기  
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안  
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  
리하여야 한다.

제85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① -----  
-----  
-----  
----- 행정  
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별표 5)  
에 의하여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99조(금고의 구분) ① (생략)  
  
② 영 제49조에 따른 공법인인 금융  
기관의 회원을 제1항제3호부터 제5  
호까지에서는 금융기관으로 본다.

제99조(금고의 구분) ① (현행과 같  
음)  
② ----- 제4  
호-----.

제150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 ② (생략)  
 <신설>

제10장 보칙

제158조(재정보증) ① 재정보증관리  
 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  
 었을 대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  
 다.

② · ③ (생략)

④ 제3항의 재정보증기간 중에 회  
 계관계공무원이 전출 또는 퇴직 등  
 의 사유로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  
 자분으로 불입된 보험료를 후임자  
 에게 승계토록 한다.

제150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증빙서류는 해당 회계관서에서  
 원본을 보관하되, 전자적 정보처리  
 시스템에 따라 생성된 문서는 전자  
 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제10장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제158조(재정보증) ① -----  
 -----  
 -- 때----- 이  
내-----.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불입-----  
 -----.

## 〈별표 1〉

관 직 명	본 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관서	그 밖의 관서·임시관서	등
회 계 책 임 관	자치행정국장	-	-	-	-
징 수 관	자치행정국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관서의 장	동장
분 임 징 수 관	세무1·2과장, 세외수입 주관 실·과장	-	세입업무담당과장	-	-
재 무 관	자치행정국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	동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 임 재 무 관	재무과장, 각 실·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실·과장 (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관서의 장 ·임시관서의 장	-
총괄채권관리관	자치행정국장	-	-	-	-
채 권 관 리 관	소관 실·과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관서의 장	동장
총괄부채관리관	기획예산실장	-	-	-	-
부 채 관 리 관	소관 실·과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	-
기금총괄관리관	기획예산실장	-	-	-	-
통 합 지 출 관	재무과장	-	-	-	-
지 출 원	지출업무담당	의정업무담당	지출업무담당	-	지출업무담당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 입 금 출 납 원	세입업무담당	세입업무담당	세입업무담당	세입업무담당	세무·재무업무담당
일 상 경 비 출 납 원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재무업무 담당 또는 서무업무담당(자)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 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출 납 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서무업무담당	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하도록 한다.					

- 비고 1. 0000담당 : 시·도(팀·계장 등의 5급 이상), 시·군·자치구(팀·계장 등의 6급 이상)  
 2. 0000담당자 : 시·도(5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시·군·자치구(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3. 지 출 원 : 지출업무담당뿐만 아니라, 재무·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이 가능함

## 〈별표 2〉

##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기 타 관 서
<u>의회사무국, 보건소, 출장소,</u> <u>동 행정복지센터</u>	지출원이 없는 관서

<별표 3>

경비별 지출원인행위 정리구분표

구 분	정 리 시 기	금 액 구 분
1.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비 . 급여류 . 수당류 . 보조금·부담금 및 교부금 . 출자금·출연금 . 제세 . 기타  2. 계약에 의한 경비 . 보험료 . 용자금 . 공사비 . 기타  3. 기타경비 . 전출금 . 보증금 . 특별판공비 . 기타	지출결정시 지출결정시 지출결정시(교부결정시)  출자 또는 출연결정시 납부결정시(신고시) 지출결정시  납부결정시 용자결정시 계약체결시 계약체결시(청구받은 때)  전출결정시 납부결정시 지출결정시(계약체결시) 지출결정시	당해 기간분 급여액 지출하고자 하는 금액 지출결정액(교부결정액)  출자·출연결정액 납부세액 지출하고자 하는 금액  납부결정액 용자를 요하는 금액 계약금액 계약금액(청구받은 금액)  전출을 요하는 금액 납부를 요하는 금액 지출을 요하는 금액(계약금액) 지출을 요하는 금액

## 〈별표 4〉

## 지출원인행위부 정리구분표

구 분	정 리 시 기	금 액 구 분
1. 관서의 일상경비	교부결정시	교부금액
2. 세계현금의 전용	전용결정시	전용결정금액
3. 과년도 지출	과년도지출 결정시	지출을 요하는 금액
4. 이월예산등에 의한지출	지출결정시	지출을 요하는 금액
5. 지출금의 반납	현금의 반납통지가 있는 때	반납금액
6. 계속비	계약체결시	계약금액
7. 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시	채무부담행위액

## 〈별표 5〉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85조 관련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지급기준

## 1. 지급기준

구 분	예탁기간	대 상 종 류	이 자 율	비 고
정기예금 예 탁	만6개월 이상	○ 차액·계약·하자보수 보증금 ○ 공공시설 손실부담금 ○ 법률에 의한 각종 예치금	당해지방자치단체취 급점(금고)의 정기예 금 중 최고이자율	국가의 경우 계 약보증금, 차액 보증금
별단예금 예 탁	만6개월 미만	○ 정기예금 예탁대상 중 만6개월 미만인 경우 ○ 공공예금 예탁대상 이외의 모 든 세입세출외현금	별단예금으로 예탁 하고 동예금 최고의 이자율	국가의 경우 계 약보증금, 차액 보증금을 제외 한 보관금
공공예금 예 탁	예탁기간과 관련없음	○ 원천세, 의료보험료, 기여금 등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 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 관하는 경비	이자 미지급	

## 2. 정기예금의 만기일

가. 정기예금의 만기일은 당해 보증금, 부담금, 예치금의 납부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만료일(이하 『계약만료일』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만료일전에 계약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여 환급할 수 있으며, 계약만료일을 초과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완료일까지 만기후 정기예금(정기예금의 만기일이 도래되었으나 원리금을 인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예탁해 두는 예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예탁

나. 계약이행 중에 계약만료일을 연장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초 설정한 예금만기일이 도래한 후 그 다음날부터 변경된 계약만료일까지 다시 정기예금으로 보관금을 예탁하며, 이 경우 정기예금의 원금은 보증금, 부담금, 예치금의 원금과 당초 예탁과정에서 발생된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계약연장기간이 6월이하인 경우에는 만기후 정기예금으로 예탁할 수 있음

### 3. 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전에 별단예금 및 공공예금에 예탁하여 보관중인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사항에 따라 이를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으로 전환하여 보관한다.

가. 전환기간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일로부터 10일 이내

나.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의 원금 : 공공예금 또는 별단예금에서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으로 전환할 때의 세입세출외 현금 전액(납부자가 납부한 원금과 예탁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를 합한 금액)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9 - 1597호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0. 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당조항을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맞게 관련 조문 정비(안 제1조 목적)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 교육혁신과 전화 560-5763, 팩스 560-2716)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당조항을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맞게 관련 조문 정비(안 제1조 목적)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개정안 : 별지참조

##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으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급학교”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로,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후단 중 “참여할지”를 “참여하지”로 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명시한”을 “분명하게 밝힌”으로 한다.

제12조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u>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u>(이하 “<u>각급학교</u>”라 한다)의 교육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 ----- ----- ----- ----- <u>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u> ----- ----- ----- ----- ----- -----</p>
<p>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u>각급학교</u>의 교육여건 개선에 <u>소요되는 경비</u>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p>	<p>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u>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u>(이하 “<u>각급학교</u>”라 한다) -- <u>필요한</u> ----- ----- -----</p>
<p>1. ~ 7. (생략)</p>	<p>1. ~ 7. (현행과 같음)</p>
<p>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 ----- <u>사람</u> ----- ----- -----</p>
<p>1. ~ 4. (생략)</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 ③ · ④ (생략)</p>	<p>② · 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5조의2(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p>	<p>제5조의2(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p>



②·③ (생략)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  
니한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  
 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인천광  
 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준용) ----- 않  
은 -----  
 -----  
 -----  
 -----  
 -----  
 -----.



인천광역시 서구 제2019-1613호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1항 위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22조(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의 확인)에 의거 운행정지명령대상 차량으로 확인되었기에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0. 7.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 고 기 간 : 2019.10.07. ~ 2019.10.21.(15일간)

#### 2. 공 고 내 용

1. 행정처분 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2. 대상차량	등록번호	20구7588외 7건(붙임 참조)		
	차명			
3. 운행정지사유	소유자의 요청 등			
4.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5. 관할관청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담당부서	교통민원과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 032-560-5747, FAX 032-560-2793)		

#### 3. 유의사항

-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2)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3)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이 가능하며 말소 등록된 자동차(무등록 자동차)를 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서구청 차량민원과 차량관리팀 (☎ 032-560-57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붙임]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

연번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명	운행정지명령 등록일	비고
1	20구7588	이*복	2019.09.30	
2	29소3409	박*환	2019.09.26	
3	인천32머9273	박*규	2019.09.26	
4	32도7577	김*비	2019.09.24	
5	08버2700	이*철(오토**모터스)상 품용	2019.09.19	
6	25려9856	한*예	2019.09.19	
7	64다2673	김*섭	2019.09.03	
8	59모5296	정*인	2019.09.02	